

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「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운영기준」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999호, 2009. 12. 31)을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
기술표준원장

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R-005	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	별첨

[별첨] : 1. 개정 전문(KOLAS-R-005)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 관한운영기준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999호, 2009.12.31)을 폐지하며, 종전의 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 관한운영기준에 의한 평가사등록 및 평가사운영 등의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끝.